

- 2026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- 한시임기제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후보자 등록 안내

2026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3월 13일

1. 최종합격자 명단

분야	선발인원	최종합격인원	응시번호
한시임기제공무원(5호)	1명	1명	26A-504
한시임기제공무원(6호)	1명	1명	26A-602
한시임기제공무원(7호)	2명	1명	26A-703

2. 임용후보자 등록 안내

가. 등록 기간 : '26. 3. 16.(월) ~ 3. 18(수)

나. 등록 방법

1) 등록 기간 내 제출서류 스캔(PDF파일) 후 e-mail 제출

※ e-mail 주소: jmihyun@korea.kr

2) 이메일 제출 후 제출서류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

※ (13809)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(중앙동)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
운영지원담당관실 한시임기제(수사행정) 채용담당자 / ☎ 02-6320-0282

다. 제출서류

- 1) 기본증명서 1부(“상세”로 발급.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된 것으로 제출)
- 2) 최종학력증명서(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) 1부
- 3)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
 - ※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, 국·공립 의료원 등에서 공무원용으로 발급
(검사 시 사진 2매 필요, 발급 기간 2일 정도 소요)
- 4) 사진 1매[최근 6개월 이내 촬영, 3.5cm × 4.5cm 규격(여권용) 사진]
- 5) 병적증명서 1부 (해당자에 한함)

3. 유의사항

- 가. 최종합격자가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됩니다.
- 나. 신체검사서 및 임용 결격사유 조회에서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다. 기타 임용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실(☎02-6320-028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채용 신체검사서

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4. 12. 3.>

(앞쪽)

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구 분	② 시험실시 기관	③ 응시직명	④ 응시번호	⑤ 성 명	사 진 (3.5cm × 4.5cm) ※ 압인 또는 계인
⑥ 검사 시					
⑦ 재 사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

검 사 내 용

키	cm	체 중	kg
허리둘레	cm	혈 압	
(교정)시력	좌: () 우: ()	색 신 (색 각)	(교정)청력 좌: () 우: ()
종 양 질 환		이 비 인 후 질 환	
호 흡 기 질 환		심 혈 관 질 환	
소 화 기 질 환 (간 질 환 포함)		신 장 / 비 뇨 기 계 질 환	
내 분 비 질 환		혈 액 질 환	
신 경 질 환		피 부 질 환	
근 골 격 계 질 환		안 질 환	
정 신 질 환		흉 부 X선 검 사	
기 타			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

(서명 또는 인)

검사 결과 합격 여부	[]합 격 []판 정 보 류	합격 사유	
판정보류 사유 (질환명 및 재신체검 사 필요 사유 등)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	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검진기관의 장

(서명 또는 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
------	----------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-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-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 -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 -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-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[주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), 운전면허증, 여권 등]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 - ※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[검진기관]

-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: 도장을 눌러 찍음) 또는 계인(결침도장)을 해야 합니다.
- "검사 내용"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- 가.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"정상", "양호", "이상 없음"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.
 - 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"합격" 또는 "불합격"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.
 - ※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 - 나. 임신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.
 - (작성 예시) 임신부인 경우 "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"라고 적습니다.
- "검사 결과 합격 여부"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"√"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 - ※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.
 -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 -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에 해당하지 않음
 -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
(예시: '만성골수성백혈병'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)
 - 나.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
 -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(예시: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)
 - ※ 응시자의 질환이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.
-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